

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)		
	인증번호	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
영업장 소재지 (행정구역상 지, 번의 변경은 제외)				
중요관리점 (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)				

변경사유

분실사유

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소 인증서 1부 2.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1부	수수료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26 제2호나목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이 정하는 금액
------	---	--

유의사항

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인증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처리절차

